



알고 계신가요?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

시행시기 : 2020.1.16.

사업주가 해야 할 일



안전·보건조치 및 교육 실시

- 다양한 고용형태(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배달종사자) 노동자까지 대상 확대



유해작업의 사내도급 금지

- △도급 △수은, 납, 카드뮴의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 △허가대상물질 제조·사용
- 일시·간헐 작업 등 예외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



건설공사 발주자 조치 사항

- 계획·설계·시공 단계별 안전·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



건설공사 도급인 조치 사항

-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설치·작동 중이거나 설치·해체·조립 시 안전·보건조치 실시
-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자에게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작업 위탁



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·비치

-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제조·수입하는 자가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
-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 사전 승인

※ 2021.1.16. 시행



안전·보건계획 수립

-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·보건계획 수립(이사회 보고 및 승인) 및 이행

※ 2021.1.1. 시행

노동자가 해야 할 일



위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대피

-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, 작업 중지하고 대피



위험성평가 참여

-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, 도출된 안전·보건 조치 준수

그 밖의 준수사항



안전·보건조치 사항 준수

- 사업주,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한 산업재해 방지조치 준수



안전·보건교육 참석

-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·보건교육 참석 및 교육 내용 준수



방호장치 상실 시 신고

-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장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

※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> 자료마당 > 법령/지침정보 > “산업안전보건법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OPEN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2019-교육홍보-162